
베트남의 가공식품 수입제도

2014. 3.

한 국 무 역 협 회
호치민 지부

1. 가공식품에 관한 규제 · 절차

1. 수입자의 요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요건은 베트남 기업과 외자계(外資系) 기업 간에 차이가 있음

① 베트남 기업

2014년 2월 20일 이후 베트남 기업인 경우 활동사업내용에 「수입업」의 기재가 필요없게 됨(수입, 판매대리 등에 관한 상법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No.187/2013/ND-CP)

즉, 모든 베트남 기업이 특별한 규제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별도 수입허가신청의 필요없이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임. 2014년 2월 20일 이전은 시장에의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활동사업내용에 「상품의 수입·판매·유통사업」을 기재하고 허가받을 필요가 있었음(기업의 수입권에 관한 시행령 No. 12/2006/ND-CP)

② 외자계 기업

2009년 1월 이후 베트남의 WTO가맹시의 시장개방에 관한 약속에 따라 시장·소비자의 직접유통이 가능해짐. 단, 외자계 기업이 수입·유통업무를 할 경우 사업목적에 수입·유통업무를 포함한 투자허가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이미 발급된 투자허가증의 변경수속을 할 필요가 있음(외자기업의 상품매매활동에 관한 시행령 No.23/2007/ND-CP의 시행세칙 No.08/2013/TT-BTM)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조건은 아래와 같음(No.08/2013/TT-BTM 제 10조, 11조)

<필요서류>

아래의 필요서류를 계획투자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에 결과가 통지됨

- 투자 라이선스 발급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 수입·유통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설명서

- 수입업을 행하는 투자자의 재무적 능력 및 경험을 증명하는 문서
- (투자허가증 변경의 경우)세무당국이 발급하는 과거 2년간 법인소득세 납부증명서

<필요조건>(No.23/2007/ND-CP 제4조 제1항)

- 베트남이 시장개방을 약속한 국제조약에 가맹한 국가, 지역의 투자가일 것
- 투자형식은 베트남이 비준한 국제조약 및 베트남 법률에 기초할 것
- 상품·서비스 내용은 베트남의 시장개방 약속내용 및 베트남의 법률에 기초할 것
- 활동범위는 베트남의 시장개방 약속범위 및 베트남의 법률에 기초할 것
- 상기의 조건을 충족한 위에 관할기관이 라이선스 발행에 동의할 것

2. 자동수입허가제

2010년 이후 일부의 가공식품에 대해서 자동수입허가제도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2012년 9월 동 제도의 적용이 정지되었음(특정상품의 자동수입허가제도에 관한 산업통상부 통지 No.24/2010/TT-BCT 및 산업통상부 통지 No.27/2012/TT-BCT 참조)

※ 2014년 3월 현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자동수입허가제에 근거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

3. 수입금지품목

시행령 No. 187/2013/ND-CP 에 수출입 금지품목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해당되는 가공식품은 없음. 한편 과거에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발생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의 수입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 경우에도 수입금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출시에는 수입업자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4. 검역 또는 검사절차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식자재,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포장용구, 식품포장재, 식품용기는 검사의 대상이 됨. 단, 개인이 휴대하는 관세면제 범위내의 자가소비용 식품, 외교관·영사관의 수하물에 포함된 식품,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전시회 참가 등),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식품, 시험용·연구용 식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 No.38/2012/ND-CP 제 14조)

이와 관련 보건부가 공포한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HS코드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 No.818/QD-BYT」은 다음 13개 품목을 수입검역이나 검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하고 상세한 것은 별표에 HS코드별로 정하고 있음.

<검역·검사대상 13개 품목>

- ① 고기/어류의 조제품
- ② 동물성/식물성 유지(油脂)
- ③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④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⑤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⑥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⑦ 커피, 차, 후추
- ⑧ 야채/과일로 만든 조제품
- ⑨ 조미료
- ⑩ 음료, 알콜음료, 식초
- ⑪ 식품포장재
- ⑫ 기능성 식품, 건강보호상품
- ⑬ 식품첨가물

상기 품목의 수입에 대해 상품도착 5일전까지 검역등록을 할 필요가 있음. 검역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는 다음과 같음(No.23/2007/QD-BYT 제6조, 제10조)

<필요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신청수순>

- 검사기관(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서류 제출 *상품도착 5일전까지
- 검사기관은 서류심사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일정을 통지
- 검사 실시(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
- 샘플 분석, 기초기준과 베트남기준(TCVN)을 비교후 결과 통지

※베트남 국가기준(TCVN)은 식품별로 상세히 설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품질측량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유료 판매)

또한 알콜, 맥주, 청량음료수, 유제품, 식물성기름, 밀가루제품, 전분제품, 과자·빵·잼 및 이제품들의 포장재를 포함한 수입제품·화물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소관하는 수입제품의 식품안전검사에 관한 상공부 통지 No.28/2013/TT-BCT 의 적용을 받게 됨. 이들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함

<필요서류>

- 수입식품 검사신청서
- 보건부 또는 보건부 위탁기관이 발행한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적합의 수리서(受理書) 또는 규정적합 인정서의 공증 첨부 사본
- 화물수입계약서 및 포장명세서의 공증첨부 사본
- 수입자에 의한 증명이 첨부된 선하증권(B/L) 및 인보이스 사본

5. 동물성 식품의 제조시설등록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동물성 식품에 관한 위생과 안전검사에 관한 통지 No.25/2010/TT-BNNPTNT」의 적용을 받게 됨. 동물성 식품은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함(同 통지 제5조).

- ①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베트남 당국이 등록된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것
- ②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취득하고 있을 것
- ③통관시에 베트남 당국이 검사한 물품일 것

6. 식물성 식품의 수입규제

식물성 식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베트남이 수출국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어야 하고 적절한 포장과 저장으로 라벨표시 규제에 따를 것이 요구됨. (식물성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관한 농업농촌개발부 통지 No.13/2011/TT-BNNPTNT 제5조 1항 참조※)

※ No.05/2013/TT-BNNPTNT에 의해 일부 개정됨)

한국은 2011년 11월 1일부로 수출가능국으로 등록되어있음

<http://www.nafiqad.gov.vn/a-news-events/lists-of-foreign-establishments-approved-for-export-to-vietnam/>

7. 자유판매증명서(CFS)

베트남 보건부가 관할하는 기능성식품, 미량(微量)영양소, 보조식품, 식품첨가물, 음용수, 광천수의 수입에 있어서 수출국이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의 제출이 요구된다. (수출품 및 수입품에 적용되는 Certificate of Free Sale에 관한 결정 No.10/2010/QD-TTg)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문으로 발행하며 "자유판매증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제품으로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국가기관 발급서류로 변호사 공증절차는 필요없으나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II. 식품라벨 표시규제

식품에만 한정된 라벨 표시규제는 아니지만 「상품표시에 관한 시행령 No.89/2006/ND-CP」 및 「상품표시에 관한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HN」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 상품표시 규제와 식품표시에 관한 기재가 있음. 단 포장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선(生鮮)식품 및 가공식품에 이런 제한은 없음

1. 표시 언어

베트남어 표시가 요구됨. (동 시행령 제9조에 「상품표시 필수기재 내용은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어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

베트남어 이외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 기재내용은 베트남어의 기재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베트남어 문자 사이즈보다 커서는 안됨. 또한 규정된 내용이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수입품은 규정내용을 베트남어로 기재한 부수(附隨)표기가 필요하고 동시에 상품의 원래 표시가 남아있지 않으면 안됨.

또한 의무기재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베트남어로 기재된 내용은 원래 표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됨(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HN 제1장 제3조)

또한 특정분야에 한해 라틴문자로 기재되는 것이 허가되어 있음(동 시행령 제9조 제4항)

<라틴어로 기재가 허가되는 경우>(시행령 No.89/2006/ND-CP)

- ①베트남어 명칭이 없는 인체용 의약품의 국제명 또는 학명
- ②화학식 또는 구조식을 포함한화학물질의 국제명 또는 학명
- ③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거나 번역해도 의미가 없는 상품의 구성성분, 또는 성분량의 국제명 또는 학명
- ④상품을 생산 또는 위탁생산한 외국기업명 및 주소

2. 표시기재내용

전 상품 공통항목(시행령 No.89/2006/ND-CP 제2장 제11조)

- ①상품명
- ②상품에 대해 책임을 가진 조직 및 개인의 명칭·주소
- ③상품의 원산지

또한 상품의 성질에 따라 同 시행령 제12조 또는 기타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50종류의 상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할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음.(동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중 식품관계는 제1~4항, 제6항이 해당함.

<라벨 의무기재사항>

- 제1항 (식량) : 용량, 제조일, 상미(賞味)기한
- 제2항 (식료품) : 용량, 제조일, 상미기한, 구성성분 및 성분량,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제3항 (非알콜 음료) : 용량, 제조일, 상미기한, 구성성분 및 성분량,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또는 경고,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제4항 (알콜 음료) : 용량, 에탄올 함량, 보관방법(와인의 경우)
- 제6항 (식품첨가물) : 용량, 제조일, 상미기한, 성분량,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이중 여러 개의 항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합한 기능 및 용도로 분류함(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N 제2항 제1조의 보충사항). 예를 들어 오렌지주스는 “식료품”이 아니라 음료로 분류됨.

3. 상품명

상품명은 상품의 본질 및 효용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됨. 구성성분의 명칭이 상품명 또는 상품명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No.89/2006/ND-CP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성분량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칼슘의 함유량이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칼슘의 함유량을 기재해야 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HN 제2항 제6조의 보충사항).

4. 판매업자의 명칭·주소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닌 조직 및 개인의 명칭·주소는 아래의 각 규정에 따라 기재함

(시행령 No.89/2006/ND-CP 제14조)

- 제1항 (상품이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생산시설의 주소를 기재
- 제2항 (상품이 베트남에서 유통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와 함께 수입자의 조직이나 개인의 명칭, 주소를 기재
- 제3항 (외국기업의 판매대리점인 조직 및 개인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
 -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와 함께 상품판매를 대리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명칭, 주소를 기재
- 제4항 (상품의 독점판매권이 위임·허가되어 있는 경우)
 -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독점판매권을 위임하거나 허가한 조직 및 개인의 명칭, 주소를 기재

5. 원료품명/성분 표기

시행령 No.89/2006/ND-CP 제18조에 구성성분 및 성분량의 기재에 대한 규정이 있음

① 구성성분의 기재

-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형태가 변해도 최종제품에 존재하는 원료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품에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구성성분의 성분량

을 기재해야 함(18조 제1항)

② 성분량의 기재

- 구성성분과 함께 각 구성성분의 량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 기재된 성분량은 상품의 성질 또는 상태에 따라 상품의 단위중량(單位重量) 또는 총중량(總重量)에 대한 성분중량, 체적(體積)에 대한 성분중량, 체적에 대한 성분체적, 성분중량의 백분비 또는 성분체적의 백분비 중 하나가 됨(18조 제2항)

- 예를 들어 쇠고기 소세지는 「쇠고기 소세지(쇠고기 30%)」라고 상품명 옆에 쇠고기의 정량을 기입하거나 구성성분의 내용표시에 쇠고기 30%라고 기재해야 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HCN 제2장 제2조의 보충사항)

③ 식품

- 성분량이 많은 순으로 구성성분을 기재함(제18조 제3항)

④ 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 첨가물의 그룹 명칭. 첨가물의 명칭, 국제코드(코드가 있는 경우)를 기재해야 함. 첨가물이 향료, 감미료, 착색료인 경우 천연물질인지 합성물질인지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함.

- 단, 다음의 동 시행령 <부표 Ⅲ>에 정해진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상품의 구성성분과 성분량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부표 Ⅲ : 상품의 구성성분, 성분량 기타의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령 No.89/2006/ND-CP) 중 가공식품에 관한 부분

① 식품 : 수산물(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가 첨가된 경우)

-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의 성분량을 기재함

② 식품첨가물 : 2 이상의 성분이 같은 포장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 포장내의 성분 비중이 많은 순으로 기재함

6. 영양 표기/칼로리 표기

현 시점에서 일반식품에 대한 영양표기/칼로리 표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단

예외적으로 의약품 영양식품, 임산부 및 36개월 미만의 유아용 영양보조식품 등은 영양 수요 레벨에 관한 표시가 필요함(시행령 No.38/2012/ND-CP 제18조)

7. 알레르겐(Allergen) 표기

인체·동물 또는 환경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리스트에 기재된 보존료를 규정량 이상으로 함유한 물질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구성성분과 보존료의 명칭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No. 89/2006/ND-CP 제19조 제3항).

또한 상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와 경고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식품첨가물의 성분을 표시할 경우에는 「Dùng cho thực phẩm(식품용)」이라고 기재함(同 시행령 제19조 제5항, 부표IV).

한편 정보 및 경고 표시는 문자, 화상, 국제관례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 기호 등으로 기재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HCN 제2장 제7조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및 경고」의 보충사항)

8. 상미(賞味)기한/소비기한/제조일의 표기

상품의 성질에 따라 제조일에 소비기한이나 상미기한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❶ 소비기한 : 특정 시점이 지난 상품이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시점(同 시행령 제3조 제10항)
- ❷ 상미기한 : 특정 시점을 지나면 상품 본래의 품질이나 사용가치를 보증할 수 없는 시점
(同 시행령 제3조 제11항)

상품의 제조일, 소비기한 및 상미기한은 양력의 일·월·년 순으로 기재해야

함(한국의 기재순서와는 반대). 일·월·년을 의미하는 숫자는 2자리로 기재하지만 년의 경우 4자리로 기재해도 무방함. 동일 시점의 일·월·년은 같은 줄에 기재해야 함(同 시행령 제16조).

표시방법에 있어서 제조일은 NSX(Ngày Sản Xuất), 소비기한은 HSD(Hạn Sử Dụng), 상미기한은 HBQ(Hạn Bảo Quản)이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HN 제2장 제5조)

<예>제조일이 2014년 2월 1일, 소비기한이 2015년 1월 31일일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

NSX : 010214 HSD: 310115

NSX : 01022014 HSD: 31012015

NSX : 01/02/14 HSD: 31/01/15

NSX : 010214 HSD: 12 month

이러한 약자를 숫자와 병기해서 기재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조일 또는 소비기한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표시 중에 보완해야 함. 또한 소비기한은 최종소비기한 또는 추천표시기간으로 표시할 수 있음.

최종소비기한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HSD를 이용하여 표시함. 추천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Sử dụng tốt nhất trước...(…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후에 날짜를 기재함.

9. 용량의 표기방법/ 내용량의 오차 허용범위

상품 용량의 표기에 대해서 측정단위로 표기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측정단위에 관한 베트남의 법률규정에 따라, 그램(g)법, 리터(ℓ)법, 미터(m)법으로 기재되어야 함. (시행령 No. 89/2006/ND-CP 제2장 제15조). 또한 기타 기재방법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CHN 제2장 제4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개수로 측정되는 상품은 자연수를 기재함. 하나의 포장에 복수의 상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각 상품의 용량 및 상품의 총량, 또는 각 상품의 용량 및

상품의 개수를 기재해야 함. 한편 용량의 기재방법은 同 시행령 부표 I에 규정되어 있고, 이중 식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부표 I> 상품 용량의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

No.	상품의 상태, 형상 또는 종류	기재방법
1	고체 또는 기체의 상품	순(純)중량
	고체와 액체를 혼합한 상품	혼합물의 순(純)중량 및 고체의 중량
	압축기체의 상품	압축기체의 순(純)중량 및 용기의 순(純)중량 또는 압축기체의 순(純)중량 및 압축기체와 용기의 총(總)중량
2	페이스트(paste)상태의 상품	20℃에서의 순(純)중량 또는 실(實)체적
	스프레이 캔에 들어있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상품	페이스트(paste) 상태의 물질 및 스프레이 캔의 순(純)중량
3	액체의 상품	20℃에서의 실(實)체적
	스프레이 캔에 들어있는 액체 상태의 상품	액체의 물질 및 스프레이 캔의 20℃에서의 실(實)체적

한편 내용량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시행령 No.89/2006/ND-CP 제10조 「상품표시의 기재책임」에 「부수적 표시를 포함한 상품표시의 기재내용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상품의 품질을 바르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재책임에 따른 표시에 오차가 있을 경우 「상품판매에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 No. 06/2008/ND-CP」 제23조 (시행령 No.112/2010/ND-CP 제1조 제14호에 의해 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10. 표시 위치/ 문자 크기

상품표시는 규정된 표시내용의 전부가 쉽게 인식되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함. 또한 외장을 개봉해서는 안되거나 개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내용 표시가 외장에 표시되어야 함(시행령 No.89/2006/ND-CP 제6조).

규정내용의 모두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어도 상품의 명칭,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조직이나 개인의 명칭, 상품의 양(量), 제조일, 소비기한 및 상품의 원산지는 기재될 필요가 있음.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은 상품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기재내용이 표시된 곳을 나타내야 함.

상품표시의 기재에 책임을 지닌 조직 및 개인은 상품표시의 크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음. 단, 상품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전부가 기재되어 그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同 시행령 제7조).

표시사항의 문자, 숫자, 그림, 화상, 마크 및 기호는 명확해야 하며 규정된 기재내용은 문자 또는 숫자의 색상이 배경색과 대조적이어야 함(同 시행령 제8조).

11. 라벨 표시의무의 적용

부수적 표시를 포함한 표시의 기재내용은 명확, 정확해야 하고 상품의 품질을 바르게 표시해야 함(시행령 No.89/2006/ND-CP 제10조). 국내유통을 위한 상품이 베트남에서 생산, 조립, 가공, 포장되는 경우에는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이 표시의 기재에 대한 책임을 짐.

또한 베트남에 수입된 상품의 원래 표시가 동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한 조직이나 개인이 원래 표시를 그대로 둔 채 상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부수적인 표시를 기재해야 함.(同 시행령 제9조 제3항 참조).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이 계약에 의해 외국의 생산자 등에 수입상품의 표시기재를 위탁한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유통할 경우 상품표시의 기재책임은 「수입자」가 지게 됨.

(시행세칙 통지 No.9/2007/TT-BKHHCN 제1장 제4조 「상품표시의 책임」)

12. 기타 유의사항

(1) 방사선 조사(照射)식품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사선 조사식품(방사선으로 살균한 식품)은 식품 안전법(법률 제55/2010/QH12)에 따라 베트남어로 「Thực phẩm đã qua chiếu xạ」 로 표시하고 (同법 제44조 제2항 c호),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관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함(제38조 제2항)

(2) 유전자 조작식품

베트남어로 「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 라는 표시를 붙여야 함(식품안전법 제44조 제2항 d호)

(3)기능성 식품

기능성식품은 인체 기관의 운동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으로 영양가를 가지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거나 병리학적인 위험을 경감시키는 식품으로 정의됨 (보건부 공포 「기능성식품의 제품관리에 관한 통지 No.08/2004/TT-BYT 」)

이러한 기능성식품에 대해서 베트남어로 「Thực phẩm chức năng」 표시를 붙여야 하며 치료약의 대체효과가 있다고 표시해서는 안됨(식품안전법 제44조 제2항 a호)

또한 기능성식품의 표시내용은 기타 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同 통지 제2장 제3조)

<기능성식품의 표시조건>(통지 No.08/2004/TT-BYT)

- ① 특수목적에 지닌 식품의 경우, 보조식품, 보건용식품, 기능성식품, 다이어트식품, 약용(藥用)영양식품 등 종류의 명칭, 사용대상, 효과, 적정 섭취량, 사용금지대상,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있는 경우)을 취급설명서에 기재함
- ② 생물학적 활성물질 함유식품의 경우 「본 식품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료약을 대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 표시하고 부수적 표시사항에 기재함. 생물학적 활성물질 함유식품은 인체 기관의 운동을 보조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거나 병리학적인 위험을 경감하는

기능을 가진 식품을 의미함.

- ③ 기능성식품의 표시사항에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약품을 대체하는 식품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됨

Ⅲ. 식품의 포장에 관한 규제

1. 포장용기의 소재에 관한 규격기준

보건부 공포 「식품중에 포함된 백신과 화학물질의 최대허용량에 관한 결정 No.46/2007/QD-BYT」 제 4장에는 소재·용기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중금속의 최대허용량(ML 수치 : Maximum Level)을 용기의 크기와 형태, 소재 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용기·소재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중금속의 ML 수치>

(결정 No.46/2007/Qd-BYT)

- ① 세라믹·유리용기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중금속(납, 카드뮴)의 ML 수치
- ② 깊이가 있는 유리용기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중금속(납, 카드뮴)의 ML 수치
- ③ 통조림용 합금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페놀, 포름알데히드, 에피크로로히드린, 염화비닐)의 ML 수치
- ④ 일반 플라스틱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물질(고무, 포름알데히드, 나일론, 폴리메틸벤젠, 폴리카보나이트, 폴리비닐알콜,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ML 수치와 검사지표
- ⑤ 식품과 접하는 도구 및 세제용기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물질(비소, 납, 메탄올, 보건부 허가리스트에 등재된 첨가물, 생분해성)
- ⑥ 식품보관용기(세라믹·유리용기 제외)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중금속(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의 ML 수치

기타 「④ 일반 플라스틱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물질」 과는 별도로 플라스틱 식품포장기준에 대한 상세규정이 있음(보건부 공포 「플라스틱 식품포장에 관한 결정 No.3339/2001/QQ-BYT」 제2~4조)

<플라스틱 식품포장 상세기준>

- ① 공통기준 (포장면적에 대한 ML 수치 기준)
- ② 모노머(monomer: 중합체를 구성하는 기준단위물질)와 발암물질(initiator:

유전자에 이상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기준(안전하게 사용가능한 ML 수치

- ③ 첨가물 기준 (식품포장에 사용하는 원료의 첨가물 기준).
TCVN6514-8:1999(AS2070-8:1992E)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베트남 품질측량총국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 ④ 착색제(着色劑) 기준 (식품포장에 사용하는 원료의 첨가물 기준).
TCVN6514-6:1999(AS2070-9:1992E)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베트남 품질측량총국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 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기준
- ⑥ 폴리에틸렌텔레프탈 기준
- ⑦ 폴리비닐클로랄 기준

2. 포장방법에 관한 규격기준

식품의 포장 및 용기는 안전한 원료로 만들고, 식품을 오염, 악취, 맛의 변화에서 보호하여 소비기한까지 식품의 성질을 유지해야 함. 또한 포장은 보건부 장관이 규정한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식품의 포장·용기·도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함. 또한 유통 전에 당국에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마쳐야 함(식품안전법 제18조)

구체적인 규격은 플라스틱 용기는 QCVN 12-1:2011/BYT, 고무 용기는 QCVN 12-2:2011/BYT, 금속제 용기는 QCVN 12-3:2011/BYT에 정해져 있음.

IV.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제

1. 식품첨가물의 사용규제

식품첨가물과 식품가공 보조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식품안전법 제17조)

- ❶ 기술적 기준(QCVN 4-18,4-19,4-20,4-21,4-22,4-23:2011/BYT 등)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를 것
- ❷ 식품 라벨 또는 첨부자료에 베트남어 또는 제조지역의 언어로 적정사용방법을 명기하고 있을 것
- ❸ 식품의 제조·운영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
- ❹ 유통에 앞서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당국에 할 것
(등록절차는 식품안전법의 세칙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36/2012/ND-CP호 제2장에 정해져 있음)

2. 인가 식품첨가물

상기 조건중 ❸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는 「식품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 No.27/2012/TT-BYT」 제3조, 부표 I에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400종류가 명기되어 있음.

또한 동 통지 부표 II에는 각 식품에 대한 최대 사용허용량(ML 수치)에 대해 첨가물의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국제번호 부여체계(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에 따른 번호, 베트남어·영어의 알파벳순으로 기재되어 있음

동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음.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거나 식품에서 이 첨가물이 발견될 경우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됨.

V. 잔류농약에 관한 규제

식품중의 잔류가 허용된 (1)동물용 의약품 (2)유독균류(有毒菌類) (3)중금속 (4)미생물 (5)식물보호를 위한 약품(이하 농약)에 대해 대상품목별로 최대허용량이 정해져 있음

기본적으로 국제 Codex 기준에 근거한 보건부 공포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백신과 화학물질의 최대허용량에 관한 결정 No.46/2007/QD-BYT」을 참고하기 바람.

①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 59종류에 대해 영어 알파벳 순으로 동물의 종류 및 부위(고기, 비계, 내장 등)별로 MRL 수치(Maximum Residue Level)가 기재되어 있음(통지 No.24/2013/TT-BYT 제4조)

② 유독균류(有毒菌類)

- 9종류(아프라톡신 B1, 아프라톡신 B1B2G1G2, 오크라톡신 A, 파툴린, 디오키시니바레놀, 제아랄레논, 니신, 아프라톡신 M1)가 기재되어 있음(同 3장)

③ 중금속

- 8종류(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주석, 구리, 아연)가 대상품목별로 MRL 수치가 기재되어 있음(同 5장)

④ 미생물

- 각 대상이 되는 식품 12종류 <밀크 및 유제품, 고기 및 육(肉)가공품, 생선 및 수산품, 알(卵) 및 알(卵)조제품, 곡류 및 곡류 조제품, 청과(靑果) 및 청과조제품, 음료, 조미료, 육아식품, 아이스 및 얼음, 통조림, 유지(油脂) >에 대해 대상품목별로 미생물명과 최대허용량이 기재되어 있음(同 6장)

⑤ 농약

- 178종류가 대상이 되는 식품, ADI(Accept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 허용량) 수치, MRL 수치가 농약명의 알파벳 순으로 기재되어 있음(同

8장 1절)

이상의 시행령, 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유독균류, 중금속, 미생물, 농약의 잔류는 인정되지 않음. 식품에서 잔류가 인정되지 않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잔류허용량을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될 경우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됨.

VI. 기타 유의할 점 및 참고정보

1. 식중독 사고의 방지 및 극복

식품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① 조직 또는 개인이 식중독 사고에 관한 조짐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인민 위원회, 의료기관 또는 담당국가기관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식품안전법 제52조)
- ② 식품의 제조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과정에 통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및 담당기관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할 책임을 짐(제7조 제2항)
- ③ 식품유통업자는 취급식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한 식품이 발견된 경우 즉시 유통을 정지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국의 조사에 협력할 의무를 짐(제8조 제2항)

2. 식용 내장육(內臟肉)의 수입

2009년에 식품안전위생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세균에 오염된 채 상미가한이 기재되지 않은 식용동물의 내장 수입품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2010년 식용동물의 내장 수입은 일단 금지됨. 그러나 수입금지는 WTO 협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비난에 따라 2013년 9월 1일부로 농촌농업개발부의 공식문서 No.2408/BNN-TY 로 수입금지가 해제됨.

단, 내장의 수입은 통관 지점을 하이퐁, 호치민, 다낭의 항구에 한정하여 가능하게 하고 철저한 검사를 받는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음.

VII. 관련 법규

① 수입, 판매대리 등에 관한 상법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No. 187/2013/ND-CP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7089>

② 기업의 수입권에 관한 시행령 No. 12/2006/ND-CP

- 영어 :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Documents/ViewDetails.aspx?language=en-US&ID=863>

- 베트남어 :

http://www.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16803

③ 외자기업의 상품 매매활동에 관한 시행령 No. 23/2007/ND-CP 의 시행세칙
통지 No. 08/2013/TT-BTM

- 영어 :

http://www.itpc.gov.vn/investors/how_to_invest/law/Circular_No.08_2013_BCT/mldocument_view/?set_language=en

- 베트남어 :

<http://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List=b83d2062%2D3090%2D4797%2Daf61%2D7498eff47f51&ID=6779&Web=c00daeed%2D988b%2D468d%2Db27c%2D717ca31ae3ff>

④ 외자기업의 상품매매활동에 관한 시행령 No. 23/2007/ND-CP

- 영어 :

http://www.itpc.gov.vn/investors/how_to_invest/law/2008-09-25.783532/view

- 베트남어 :

http://www.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14677

⑤ 특정상품의 자동수입허가제도에 관한 상공부 통지 No. 24/2010/TT-BCT

- 영어 :

<http://www.haiquanbinhduong.gov.vn/en/vanban/TT24BCT2010.doc>

- 베트남어 :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96239

⑥ 자동수입허가제도의 정지에 관한 상공부 통지 No. 27/2012/TT-BCT

- 영어 :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Documents/ViewDetails.aspx?ID=1187&language=en-US>

- 베트남어 :

<http://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List=b83d2062%2D3090%2D4797%2Daf61%2D7498eff47f51&ID=6481&Web=c00daeed%2D988b%2D468d%2Db27c%2D717ca31ae3ff>

⑦ 식품안전법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No. 38/2012/ND-CP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158155

⑧ 위생 및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된 HS 코드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
No. 818/QĐ-BY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vfa.gov.vn/van-ban-phap-luat/quyet-dinh-818qd-byt-cua-bo-y-te-v-e-viec-ban-hanh-danh-muc-hang-hoa-nhap-khau-phai-kiem-tra-ve-ve-sinh-a-n-toan-thuc-pham-theo-ma-so-hs-83.vfa>

⑨ 수입식품의 품질, 위생, 안전에 관한 정부 검사에 관한 보건부 결정
No. 23/2007/QĐ-BYT

- 영어 :

http://moj.gov.vn/vbpq/en/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3942

- 베트남어 :

http://www.dncustoms.gov.vn/Data/Cv_BYT/23_QD_BYT_29_03_2007.htm

⑩ 상공부 소관의 수입식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상공부 통지
No. 28/2013/TT-BC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www.moit.gov.vn/vn/pages/VanBanDieuHanh.aspx?TypeVB=0&vID=13587>

⑪ 동물성 식품에 관한 위생 및 안전검사에 관한 통지

No. 25/2010/TT-BNNPTNT (개정 전)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5968

⑫ 통지 No. 25/2010/TT-BNNPTNT 가 개정된 통지 No. 51/2010/TT-BNNPTN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98683

⑬ 식물성 수입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농업농촌개발부 통지

No. 13/2011/TT-BNNPTNT (개정 전)

- 영어 :

<http://www.nafiqad.gov.vn/b-legal-documents/circular-guiding-on-the-food-safety-control-for-imported-foodstuffs-of-plant-origin/>

- 베트남어 :

http://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6498

⑭ 통지 No. 13/2011/TT-BNNPTNT 이 개정된 농업농촌개발부 통지
No. 05/2013/TT-BNNPTNT

- 영어 :

<http://www.nafiqad.gov.vn/b-legal-documents/circular-amending-some-articles-of-the-circular-13-2011-tt-bnnptnt-of-march-16-2011-guiding-on-the-food-safety-control-for-imported-foodstuff-of-plant-origin>

- 베트남어 :

<http://www.moit.gov.vn/vn/pages/VanBanDieuHanh.aspx?TypeVB=1&vID=12975>

⑮ 수출 및 수입품에 적용되는 Certificate of Free Sale 에 관한 결정
No. 10/2010/QĐ-TTg

- 영어 :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Documents/ViewDetails.aspx?language=en-US&ID=1159>

- 베트남어 :

http://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5043

⑯ 상품표시에 관한 시행령 No. 89/2006/ND-CP

- 영어 :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Documents/ViewDetails.aspx?language=en-US&ID=915>

- 베트남어 :

http://www.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15371

⑰ 상품표시에 관한 시행세칙 통지 No. 9/2007/TT-BKHCHN (개정 전)

- 영어 :

http://www.moj.gov.vn/vbpq/en/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3970

- 베트남어 :

http://www.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14473

⑱ 통지 No. 9/2007/TT-BKHCHN 가 개정된 통지 No. 14/2007/TT-BKHCHN

- 영어: 없음

- 베트남어 :

http://www.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13726

⑲ 상품매매에 있어서 위반행위시 처분에 관한 시행령
No. 06/2008/ND-CP (개정 전)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55735

⑳ 시행령 No. 06/2008/ND-CP 가 개정된 시행령 No. 112/2010/ND-CP

- 영어 :

http://www.moj.gov.vn/vbpq/en/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10570

- 베트남어 :

http://www.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6009

㉑ 식품안전법 (법률 제 55/2010/QH12)

- 영어 :

<http://www.foodregistration.com.vn/newslaw/Law-No.-552010QH12-on-food-safety.html?p=120&id=211>

- 베트남어

http://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5606

㉒ 기능성식품의 제품관리에 관한 통지 No. 08/2004/TT-BY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http://luatvietnam.vn/VL/667/Thong-tu-082004TTBYT-cua-Bo-Y-te-ve-huong-dan-viec-quan-ly-cac-san-pham-thuc-pham-chuc-nang/3533EA28-33E2-4DE4-BB42-B34FCC743275/default.aspx>

㉓ 식품에 함유된 백신과 화학물질의 최대허용량에 관한 결정
No. 46/2007/QĐ-BY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vfa.gov.vn/van-ban-phap-luat/quyet-dinh-462007qd-byt-cua-bo-y-t-e-ve-viec-ban-hanh-quy-dinh-gioi-han-toi-da-o-nhiem-sinh-hoc-va-hoa-hoc-trong-thuc-pham-74.vfa>

㉔ 플라스틱 식품포장에 관한 결정 No. 3339/2001/QĐ-BY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http://www.spsvietnam.gov.vn/Lists/Ti%20liu/Attachments/380/3339-2001-QD-BYT_VIE.doc

㉕ 식품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 No. 27/2012/TT-BY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laocai.gov.vn/sites/sonnptnt/vanbanqppl/Trang/20130314142727.aspx>

㉖ 식품에 함유된 백신과 화학물질의 최대허용량에 관한 결정
No. 46/2007/QĐ-BYT (개정 전)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csdl.thutuchanhchinh.vn/ho_so_vb/bo_y_te/b_byt_004248_vb_quyet_dinh_46_2007_qd_byt_ngay_19_12_2007_ve_viec_ban_hanh_quy_dinh_gioi_han_toi_da_o_nhiem_sinh_hoc_va_hoa_hoc_trong_thuc_pham

㉓ 결정 No. 46/2007/QĐ-BYT 가 개정된 통지 No. 24/2013/TT-BYT

- 영어 : 없음

- 베트남어 :

<http://vfa.gov.vn/van-ban-phap-luat/thong-tu-so-242013tt-byt-ban-hanh-quy-dinh-muc-gioi-toi-da-du-luong-thuoc-thu-y-trong-thuc-pham-cua-bo-y-te-192.vfa>

㉔ 농업농촌개발부의 오피셜레터 (Official letter) No. 2408/BNN-TY号

- 영어: 없음

- 베트남어:

<http://chicucthuyhcm.org.vn/Luat/2408-BNN-TY.aspx>